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특별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라목(1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숙박업자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(이하 “온라인 인터페이스”라 한다)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,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.

별표 7 Ⅱ. 개별기준 제1호라목3)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

별표 7 Ⅱ. 개별기준 제1호라목에 4) 및 5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接客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20일	영업장 폐쇄명령
5) 별표 4 제1호라목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장

(1) 후단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. 다만,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.	5일	10일	20일	폐쇄명령
---	----	-----	-----	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. 개별기준 제1호라목4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. 개별기준 제1호라목4)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검사의뢰) <u>특별시장</u> · 광역 시장 · 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 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 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 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 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 고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야 한다.	제15조(검사의뢰) <u>특별시장 · 통합</u> <u>특별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특별시</u> · 광역시 · 도의 보건 환경연구원	1. <u>특별시 · 통합특별시</u> ----- -----
1의2. · 2. (생 략)	1의2. · 2. (현행과 같음)